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12. 14 선고 2020가단1295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3,13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목조 스토틈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33㎡를 철거하고 위 토지 3,139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경주시 C 임야 3,13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는 소외 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D이 사망하여 2017. 5. 31. 소외 E, F 및 원고가 ‘2017. 5. 2. 상속’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, 6, 7, ㉠, 12, 13, ㉡, ㉢, 15,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66㎡(이하 ‘이 사건 계쟁토지’라고 한다) 지상에는 스텔트 지붕 단층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이 존재하는데,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그 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한때 생활이 어려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잠시 비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다.

나. 판단

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G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2008. 1. 8. ‘경주시 H’에서 ‘경주시 I’로 전입하였고, 그 후 2011. 1. 31. 실제지번정정으로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‘경주시 C’로 변경되었다가 2016. 11. 9.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기사용장소로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. 그러나,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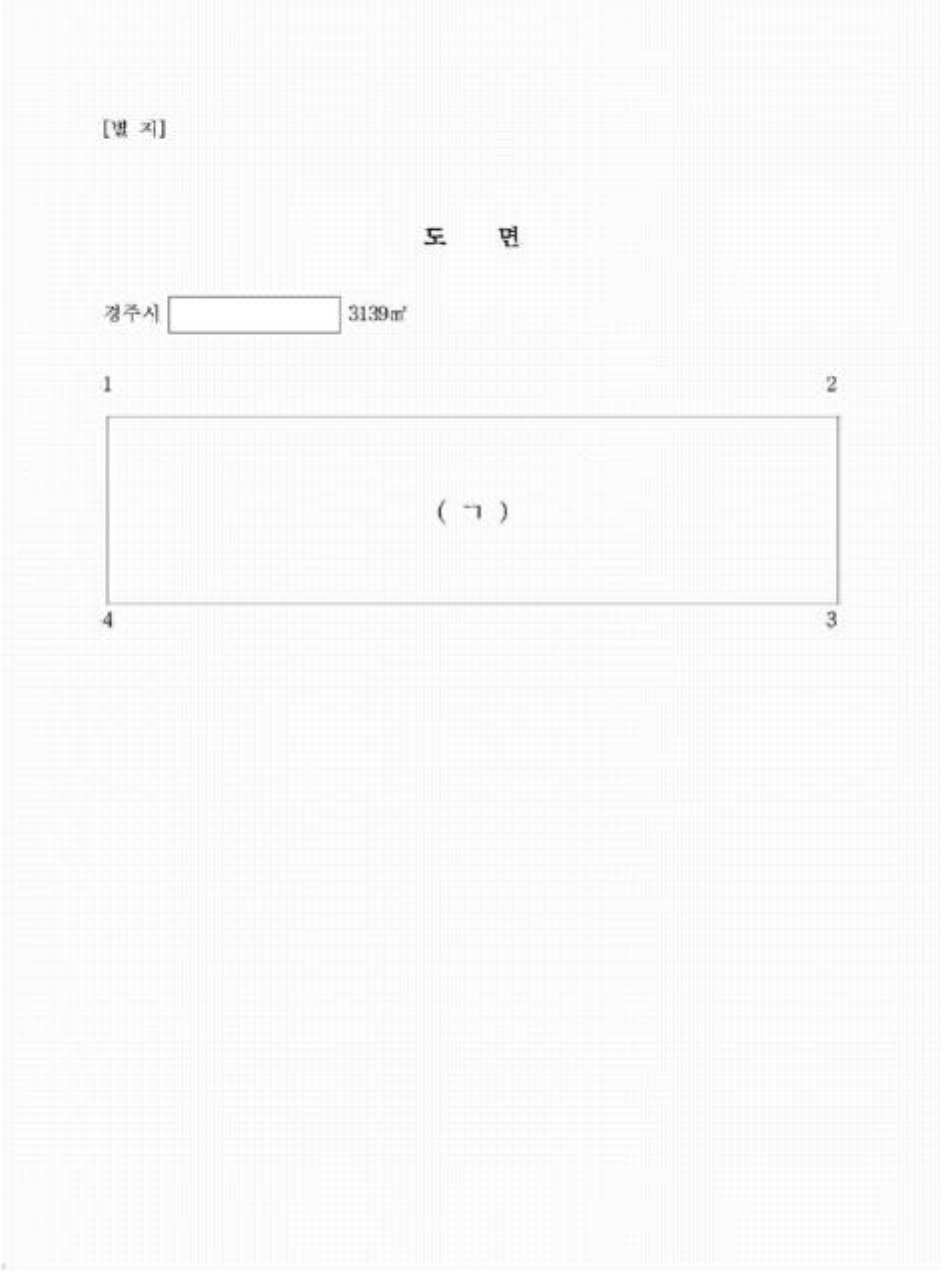
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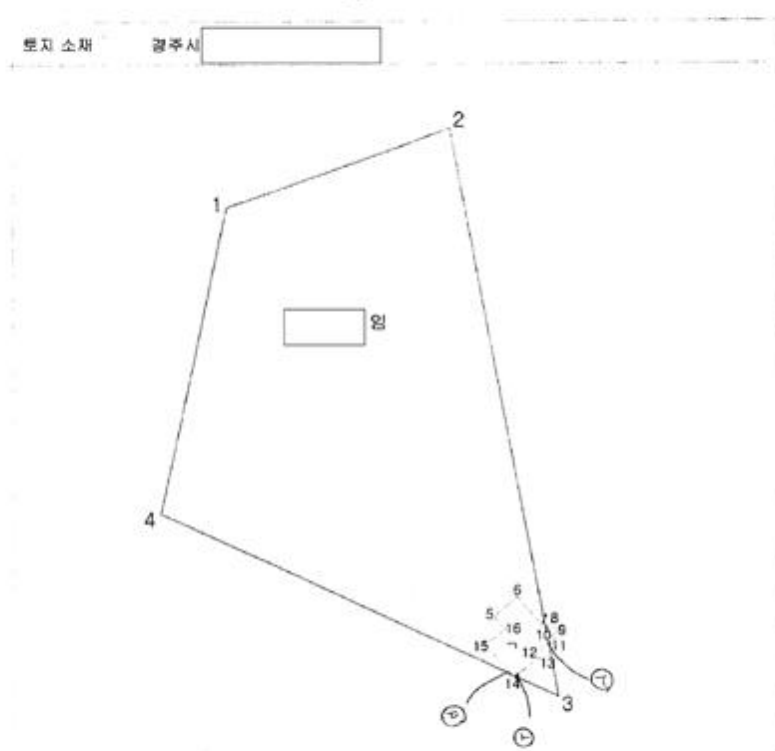
3. 결론

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한소희



참 고 도



지번 번호	면적 (㎡)	비고
1-2-3-4-1	3139	
5-6-7-8-9-10-11-12-13-14-15-16-5	66	가건물 (원적) (면적) (내건물면적)
영향 면적		

